



이 자료는 지난 1월 16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

석유수입부과금제도 개선 건의

대한석유협회

최근 이라크 전쟁 우려와 함께 베네수엘라 파업 및 겨울철 성수기 등이 맞물려 국제 유가가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석유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우리의 경제운영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석유의 공급안정성을 크게 저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정제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지난 1997년 석유 수출입 및 가격 자유화 실시로 국내 석유산업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현재 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도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석유 관세율을 보면 원유 5%, 석유제품 7%(기본 8%)로 양자간 차등화가 이뤄지긴 하였으나, 관세율 차이가 2%p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외국 및 주변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석유수입부과금도 원유와 석유제품에 동일한 금액(14원/l)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지정제주의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더구나, 석유부과금 등을 주 재원으로 운영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특회계)의 징수와 사용에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2002년 현재

에특회계의 총세입중 석유류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약 52%를 차지하는 반면 총 세출중 석유관련사용 금액은 약 20%에 그치고 있음.

이에 우리 업계는 소비지정제주의 확립을 통한 석유공급안정성 제고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개선을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첫째,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을 차등화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관세제도에 있어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가 미흡하나마 실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의 수입부과금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둘째, 에특회계 운영상 수익자 부담원칙이 준수되어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림. 특히 정부의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등으로 막대한 추가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바, 수입부과금 등에서 환경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림.

셋째, 장기적으로 에특회계의 세원을 석유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각 에너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에너지원으로부터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시기 바람. ●